

[연구보고서]

법무부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2019. 11.



법무부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책임연구원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손진희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안현미 (사)청소년교육전략21 연구원

목 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
제 II 장 민간법문화진흥센터와 법교육	7
1.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현황 분석 ...	9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20
3. 법교육 관련 유사 공모사업 분석	30
4. 강사양성과정 분석	36
제 III 장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의 실제	45
1. 조사개요	47
2. 현장 방문 및 심층면접 일정	47
3. 현장 방문 대상 기관 및 방문일시	48
4. 조사내용 및 방법	48
5. 면접 분석 결과	50
6. 요약 및 시사점	68
제 IV 장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69
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문제점	71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기본방향	77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영역별 추진 사업(안) ...	79
제 V 장 최종 보고회 발표자료	105
부 록 참고문헌	118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제 |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3월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해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됨.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서는 법교육 체험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음. 이러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면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함(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첫째,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둘째,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고 셋째,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넷째,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임. 이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 지정기간은 3년임.

- 201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한국법교육센터)의 3개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최초 지정된 이후로 2019년 현재 총 9개의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2010년 최초 지정된 이래로 거의 10년간 6개 기관 정도가 추가 지정된 현실을 감안해볼 때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관한 연구는 현재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부재한 실정임.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관한 연구내용은 법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수행 내용 중 일부에서만 다뤄지고 있음(법무부, 2008; 법무부, 2015). 따라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의 목적

법무부 법교육 지원의 핵심기관으로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법교육 현장에서 지원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법무부 법교육 사업 조사분석
 - 법무부 3년간 법교육사업 추진 현황 조사분석
 - 법무부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원 현황 조사분석
 - 법무부 법교육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및 자문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법교육 사업 조사분석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 체계 및 3년간 법교육 추진실적 조사분석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센터 활성화 기본 방향을 위한 내·외부 요인 분석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평가 및 한계점, 개선방향 도출
- 국내 타 부처 유사 기관 조사분석
- 국내 타 부처 유사 기관 모형 및 사례 분석
 - 유사 기관의 종합적 운영·지원 내역 파악
 - 유사 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제시
- 現 법교육지원법 조항을 근거로 한 효과적인 법문화진흥센터 지원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지방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법교육 추진기관 거점 역할을 담당할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효과성 검토
 - 대상별·주제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법교육 사업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검토
 - * 대상별 예시 : 새터민, 다문화, 비행청소년, 소외계층청소년, 노인 등
 - 주제별 예시 : 범죄예방(학교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인권, 배려 등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에 따른 업무별 특성화 법문화진흥센터 및 고유 업무 수행 기관 지정 효과성 검토
 - 법교육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예, 법문화진흥센터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방안 검토
 - 활성화 방안 수립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연구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 ◇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 ◇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 ◇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 ◇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민간법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교육 관련 선행연구 자료들을 분석함.
- 민간법문화센터의 현황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각종 보고 및 현황 자료를 파악하여 분석함.
- 민간법문화센터와 유사한 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능과 역할들을 탐색하여 조직 및 기능, 운영 프로그램과 예산 등을 조사함.
- 법교육 정책사업 위탁 용역 진행을 위한 타 부처의 위탁, 용역 사업들의 공모 현황을 파악함.

(2) 현장방문 조사 및 심층 면접

(field research & in-depth interview)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의 동의하에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교육적 환경을 파악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법교육 수행에 관한 의지 및 실적, 공간적 환경, 기자재 등을 파악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법교육 실시 현황 및 운영 현황, 인력 관리, 운영상의 한계점 및 발전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함.

Ⅱ. 민간법문화진흥센터와 법교육

1. 법문화진흥센터와 지정 및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현황 분석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3. 법교육 관련 유사 공모사업 분석
4. 강사양성과정 분석

제 II 장 민간법문화진흥센터와 법교육

1.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현황 분석

1) 법문화진흥센터의 취지

-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법교육 수행을 위하여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의 경우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법교육지원법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법교육지원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2항을 통하여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①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②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③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④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⑤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5호에서 법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법교육 관련 연구활동이 가능함. 그러나 법문화진흥센터는 주로 연수 등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음.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3)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경우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 법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2조 1항에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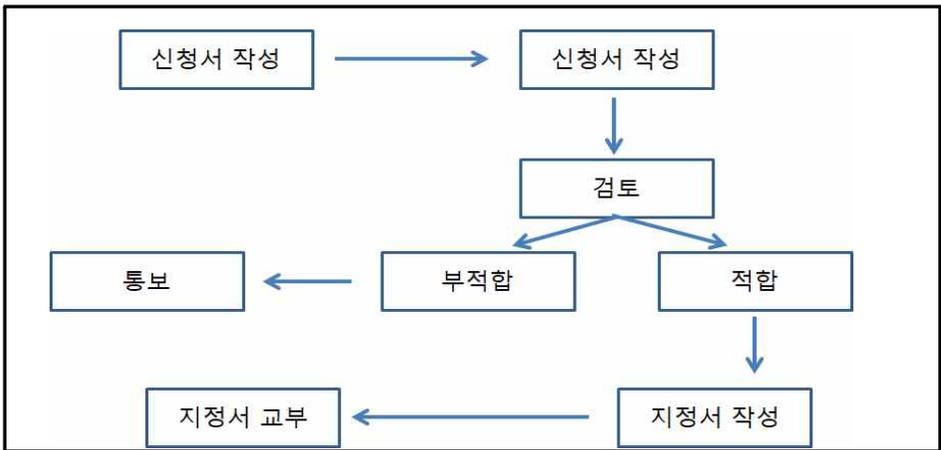
-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경우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경우법무부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2조 (지정요건)②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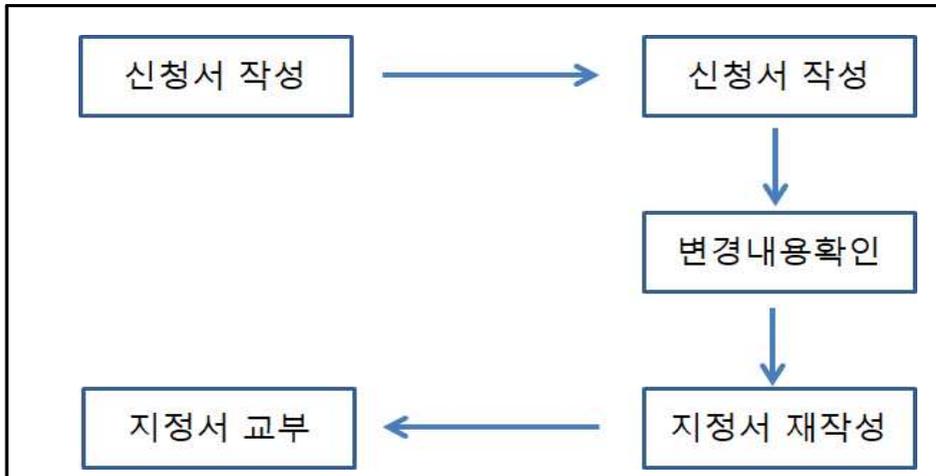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시 제출서류]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신청 직전 1년간의 법교육 실적을 적은 서류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이를 신고하여 확인하는 변경신청의 경우는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음.



4)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내용 분석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에 따라 201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한국법교육센터)가 최초로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됨.
- 지정기간 3년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2013년 1월에는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가 추가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청소년희망재단이 추가되어 총 6개로 증가하였음.
- 2015년에는 사)청소년교육전략21이 추가되어 7개의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2016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1개 기관이 추가되었음. 2018년에는 추가 기관 없이 기존 기관들이 지속 지정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에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1개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9개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표 II-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 현황

년도	지정 수	단체 수	지정 센터 명
2010 (최초 지정)	29개	3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한국법교육센터)
2013 1.1	19개	4개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추가
		6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가 청소년희망재단 추가
2015	23개	7개	사)청소년교육전략21 추가
2016	64개	8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추가
2018	80개	8개	
2019	83개	11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추가

5)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동 및 운영 실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함. 또한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해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여 지정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활동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요사업은 법률구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원직무연수, 생활법률강좌, 출장강의, 학생법교육 등), 가족법 개정운동, 출판사업 및 홍보활동, 상담 등임. 한국사법교육원은 주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법교육(일반시민·탈북민·외국인근로자 생활법률 교육), 청소년선도, 학교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전개하는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각종 법교육 강사 파견, 학생자치법정 강사 파견 및 법무부 협력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3년 지정된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는 법사랑위원의 조직화를 주요사업으로 강사양성 전문화교육에 주력하고 있음. 같은 해에 지정된 청소년희망재단은 어린이 로스쿨 프로그램,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소년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및 교육 운영, 과랑마니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위주로 소년사범 재비행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 관련 각종 연구활동,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 계도 및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며 2015년 지정된 사)청소년교육전략21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관련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청소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임. 2016년에 지정된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률상담, 이동법률상담, 법교육(교육 연구 개발, 청소년 법교육 등), 강사 파견 및 관리, 법문화체험관 운영(법률구조관, 준법생활관)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는 기관임.
- 인력현황은 각 기관마다 각기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었음. 직원 2명에서부터 29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법교육 전문인력도 8명에서부터 1,200명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컸음.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모든 법문화진흥센터가 법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음.

기관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진국 연합회	청소년희망재단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사청소년교육전략기	법문학교육센터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법률과 관련된 내용의 법교육 ▶ 학생, 실무자, 성인 및 교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법(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 교사, 학부모, 학부모, 시민대상의 법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프로그램연구개발, 학생자치법정 출장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로스쿨, 지역사회 대상의 아동, 학생, 가족 법교육 프로그램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연수생 실습 및 전문가 대상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생 대상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활동, 자원지도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대상의 전문화된 법교육 제공

- 현재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함. 그러기 때문에 지정되고 난 이후 누적된 법교육 실적을 파악하는 한계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법교육 사업 실적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는 주로 가정법률과 관련된 내용의 법교육과 학생, 실무자, 성인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사법교육원은 준법(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대상의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 프로그램연구개발, 학생자치법정 출장 강연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는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청소년희망재단은 어린이로스쿨, 지역사회 대상의 아동, 학생, 가족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주로 사법연수생 실습 및 전문가 대상의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청소년교육전략21은 법교육과 관련하여 초중학생 대상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활동, 자원지도자 양성 등의 법교육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법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드림스타트 이용 대상 등의 취약계층을 위주로 전문화된 법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6)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분석 의견

- 약 10년 동안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단 11개 뿐임. 그 중 3곳은 2019년에 지정되었으며 2곳은 2019년 11월에 지정됨. 따라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
- 각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성격과 특성에 부합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전략이 요구됨.

- 지정 신청 시 지난 1년간의 법교육 실적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각 민간법 문화진흥센터의 법교육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체계화된 DB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요구되어짐.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개요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와 유사한 조직 및 기능 형태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 아동, 청소년, 시민 대상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운영 및 위탁 운영 기관을 분석함.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틀 구성

- 분석틀은 설립근거법, 조직형태, 설립연도, 설립목적, 주요기능, 교육과정, 자격과정,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유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한국 저작권위원회,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금융보안권 금융보안교육센터, 청소년 활동진흥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대해 알아봄.
- 홈페이지 및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함.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결과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립되었음.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청렴연수원의 조직은 원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과(교육기획, 사이버 교육 운영), 교육운영과(집합교육 운영, 교육자료 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 중점진행사업은 기관대상 청렴교육(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 기관대상 청렴 교육 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형교육(청렴리더십 과정(고위직), 청렴리더십 과정(교장), 신규자 과정, 승진자 과정,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감사청렴 담당자 과정), 강사양성 및 교원대상교육(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강의시연평가, 청렴교육 DREAM 교원 직무연수), 기타교육(청렴역량 향상과정,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옴부즈맨 이해과정, 국민권익 소통과정)이 있음.
- 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자료 개발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2)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의해 설립되었음.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경영본부(기획조정부, 성과혁신부, 경영지원부), 교육진흥본부(공공교육부, 시민교육부, 학교교육부, 전문강사양성부, 스마트교육부), 대학협력본부(여성인재부, 국제교류센터, 남부센터, 여성사전시관)로 구성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5항에 규정된 주요 진행사업은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여성역량강화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있음.

-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성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함양하고 있음. 관련 교육이수 및 경력 사항,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발(서류전형)하고 4단계 집합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및 리포트 작성 등 과제수행, 강의안 서면평가 및 현장 시연평가를 통해 신규 전문강사 위촉하고 있음.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센터의 설립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센터는 인권교육활동 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을 또 하나의 권리로써 누구든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는 국가위원회의 인권교육과 홍보, 학교와의 협의와 연계의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외의 지역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인권체험관을 운영 중임.

- 사이버교육 (공직자, 교원, 시민), 집합교육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촉재위촉심사), 의무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노인복지시설/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평가), 특강교육 (방문프로그램, 인권특강, 찾아가는 학교 인권 특강), 열린교육을 운영 중임.

(4)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음.
-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처, 정책연구실, 저작권정보센터, 교육연수원, 종합민원센터를 운영 중임. 교육연수원의 교육운영팀과 교육기반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 원격평생교육원 (전문심화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교육 (저작권 강사 파견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체험 위주 학교 교육 운영),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 교육 (기업·단체 재직자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운영 중임.

(5)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 교육부의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 중임.
-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17개), 대학(396개), 수행기관(소속기관 6개, 공공기관 8개, 국립대학병원 14개)이 운영 중임(2019년 10월 기준).

- 각 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음.
- 공립대학, 타 부처소관대학은 소관부처로 이관하여 해당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시함.
-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을 실시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순회교육,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순회교육, 개인정보보호지원단 교육(상·하반기, 정보보호교육센터와 공동추진), 신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정보보호교육센터와 공동추진)을 운영하고 있음.

(6) 금융보안권 금융보안 교육센터

- 금융보안권 금융보안 교육센터는 전자금융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 의해 설립되어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 중임.
- 주요사업으로 컨소시엄(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 분석), 사업주 훈련(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 사원기관 및 관련기관 재직자 등), 보안 기술 테마교육(최신 보안 신기술 등 정보공유를 위한 과정), 금융보안 자격제도(금융보안관리사)_금융정보보호 관련 법령, 금융서비스 및 금융IT·보안 분야의 제반 지식을 갖춘 실무형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금융보안 최고책임자 과정(금융분야 최고 보안전략 전문가 양성 교육), 금융IT 보안 리더를 위한 금융보안(금융분야 CIS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금융보안 책임자 전략 수립 과정(IT 및 정보보호 부서장 등 예비 CISO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방순회교육(지방소재 금융회사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직무 역량 강화 과정), 기본소양(금융회사임직원의 정보보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증진 및 인식제고를 위한 과정), 직무기본(금융회사임직원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직무별 정보보호 기본 교육과정), 직무강화 과정(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강화를 위한 과정)을 운영 중임.

- 금융관련법·금융서비스 등 금융회사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금융IT·보안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검증하기 위한 민간자격인 금융보안관리사를 2018년 11월부터 운영 중임. 금융보안관리사 교육과정에는 은행, 증권, 보험, 전자금융업 등 금융권 IT·보안 실무경력자(3년 이상)가 참가할 수 있으며 △금융 비즈니스 △금융보안 관리체계 △금융IT·보안 △전자금융 보안 등 4개가 포함되어 있음.

(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해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책기획이사(기획조정본부, 활동진흥본부, 활동안전연수본부), 활동사업이사(활동운영본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를 운영 중임.
-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의 달 행사

의 운영 및 지원,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홍보,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청소년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 중임.

(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운영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련 교육을 운영 중임.
-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사 섭외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선발·게시하고 있음.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충북,충남)	전라권 (광주,전남,전북,제주)	경상권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전체	
연번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경력	지역
139	강나루	KG이니시...	010-4183-2...	minky0625...	○ 주요경력 前 행정안전부 개인...	수도권
138	강달천	한국인터넷...	010-5622-5...	ddkang@kis...	現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전라
137	강래구	보건복지부	010-8611-7...	kangrg@kor...	○ 2007년 ~ 현재: 보건복지부 정...	전라
136	강문석	대전과학...	042-580-6070	kangms@ds...	○ 現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산...	충청
135	강병노	㈜에스엠...	010-9092-4...	bnkang2@n...	○ 경력사항- 중소기업부 기...	강원
134	강순근	PE정보보...	010-6807-5...	ksg751024...	○ 경력사항 - 행안부, 방통위 개...	경상

출처: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2019년 10월 20일 검색)

[그림 II-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강사풀

4)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 법교육강사 자격과정 신설,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함(국민권익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금융보안원 정보보교육센터 등).
- 법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법교육운영과 같은 법교육관련 사업 전개 시 공모사업 운영 및 공모전 등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법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운영, 온라인교육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운영교육의 체계를 제시함.
-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 방안, 사이버센터 등의 운영방향의 제시가 요구됨.
- 사단법인을 통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 방안 제시 또는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립가능성을 제공함.
- 법교육전문강사 인력풀 관리시스템 및 법교육 프로그램 공유 플랫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표 II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구분	국민권익위원 청렴연수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한국 저작권위원회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교육센터	청소년 활동진흥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설립 근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 조(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의 설립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제112 조(한국저작권위 원회의 설립)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자금융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청소년 활동진흥법	개인정보 보호 법」 제 28조
조직형태	국무총리소속 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법정법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	재단법인 (전문공공기관)	교육부	사단법인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 원 위탁운영
설립	2012.	2003. 2	-	1987	2012	2015	2010	-
목적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운영	인권교육활동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 공유	저작권관련 사항 심의 및 분쟁 알선, 조정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	금융권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청소년육성	개인정보보호 사업 및 교육
주요기능	청렴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정보보호인식교 육	금융권 보안 전담기구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
교육과정	기관대상 의무화교육 강사양성교육 기타교육	성인지정책교육 전문강사양성교 육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등	대상별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의무교육 특강교육 등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청소년저작권교 실	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교육 교재개발 교육과정점검 등	컨소시엄 사업주호련 테마교육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인정보보호교 육 온라인교육 현장교육
자격과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금융보안관리사	없음	없음
운영비	국비	국비+자체수입	국비	국비+자체수입	국비	국비+자체수입	국비	국비

<표 II-4>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구분	특징	적용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청렴강사 양성을 위한 단계별 전문교육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운영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강사 자격과정 신설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교육관련 공모전 실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전문강사양성과정 국외사업운영(자체교육, 협력연수, 국제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운영 전문강사양성과정 과정운영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운영 가능 국책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정립 사례
인권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교육(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기초교육(저변확대 교육), 전문교육(현장전문역량강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교육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운영교육의 체계 제시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센터 및 집합교육이 가능한 3개의 지역센터와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 사이버센터 등의 운영방향 제시
금융보안권 금융보안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보안 자격제도(금융보안관리사)과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단법인으로 운영 금융보안관리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법인을 통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 방안 제시 전문강사과정 및 교육과정 제시 강사자격과정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약탁집행형 준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자체수입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 근거 제공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립가능성 제공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관리플 운영 프로그램 공유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전문강사 플 관리시스템 법교육 프로그램 공유 플랫폼 운영

3. 법교육 관련 유사 공모사업 분석

1) 법교육 관련 유사 공모사업 분석 개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아동, 청소년, 시민 대상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을 분석함.

2) 법교육 관련 유사 공모사업 분석틀 구성

- 공모유형 및 내용, 공모사업규모,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구분함.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테마활동 공모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함.
- 공모사업 안내문 및 공모사업 운영 기관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결과

(1)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테마활동 공모사업

- 청소년의 꿈과 끼가 ‘나라사랑’ 이란 주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종일형(4시간 이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해 20여 개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당 1,000만원 내외 지원하고 있음.

- 2019년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종일형(4시간 이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독립(일제 강점하의 독립정신), 호국(6.25 전쟁 등 국가위기 시 호국정신), 민주(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정신), 국가자긍심 함양(국가 상징물을 통한 나라사랑 등), 역사 바로알기(독도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대한민국 하나 되기(다문화 가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일체감 제고) 등의 주제로 진행됨.
- 공모사업신청자격은 체험활동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 1개 기관에서 1개 프로그램 제출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계상되어야 함. 1회성, 행사성, 단순 탐방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히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함.
- 평가항목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독창성,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세부 이행방안의 적정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청소년의 욕구·흥미반영), 예산편성의 적정성(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홍보·운영능력(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홍보계획, 안전 및 위생관리), 기타(자부담 비율, 자유학기제(진로체험 등) 연계, 전년도 우수 프로그램 선정 기관)임.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활동(기획, 창의융합, 청소년주도형), 참여, 보호(유해환경개선)의 프로그램에 대해 150만원~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19년은 청소년을 대립과 갈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해결 주체’

로 인식하는 사회 공감대 프로그램(사업)을 확대하고 범청소년계 등이 다양한 형태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

- 민주시민(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올바른 인식과 판단으로 발전적인 민주사회 형성을 위한 소양을 기르는 활동), 성평등 의식 제고(성별 대립과 갈등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포용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진로개발역량(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 및 직업준비를 위한 현장체험 중심 활동), 기타(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에 대한 사회 주체로의 인식 전환, 균형성장 및 역량개발, 청소년주도성 회복 등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 활동 및 보호영역은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참여영역은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내 위원회·동아리 등 자율적으로 구성된 청소년팀(10~20명 내외)이 신청할 수 있음.
- 사업평가는 활동과 보호영역은 사업계획의 적절성(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범위 및 내용 명확성, 사업계획 체계성,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크로스커팅 이슈* 위배 여부(환경, 젠더, 거버넌스 분야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Cross Cutting Issue 고려)), 프로그램 창의성(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청소년의 관심 및 흥미 유발 가능성,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기획과정에서의 청소년 의견 반영), 단체역량 및 지도자 전문성(공간 및 시설장비 확보의 적절성, 안전 및 위생관리 적절성,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용 정도, 홍보계획,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성, 기타 지도자의 전문성, 자원봉사인력 활용 정도), 사업 기대효과(사업추진결과 기대되는 파급효과, 타 기관에서의 보급 가능성)임. 참여영역은 사업계획의 적절성(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범위 및 내용 명확성, 사업계획 체계성,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크로스커팅 이슈 위배 여부(환경, 젠더, 거버넌스 분야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Cross Cutting Issue 고려)), 청소년 참여도 및 프로그램 창의성(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도, 청소년팀 구성원의 참여 의지 및 참여 가능성),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도(담당 지도자의 적정성, 공공기관 및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연계·활용 정도, 홍보계획), 지역사회 변화 기여도(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역특화 정도, 사업추진결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그 밖의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있음.

(3) 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운영 중임. 지원 규모는 사업별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3,000만원)임.
- 구체적인 공모사업내용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일상 속 성차별 언어개선, 성별갈등 해소 등, 대중매체의 남녀차별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여성·평화·안보’ 등 글로벌 성평등 인식 확산, 성평등 실천 캠페인, 여성친화도시 만·관 협업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기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 강화 및 예방,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기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여성·아동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역량 강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 기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임.

-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임.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4) 법교육 관련 유사 공모사업 분석 및 적용가능성

- 관련 기관의 운영 목적이나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대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 1회성, 행사성, 단순 탐방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히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함.
- 소규모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 지원이 이루어져 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도(담당 지도자의 적정성, 공공기관 및 지역인프라 등 지역자원 연계·활용 정도, 홍보계획), 지역사회 변화 기여도(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역특화 정도, 사업추진결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그 밖의 기대효과)를 고려하면서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누출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구조개선, 탄력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를 이루고 있음.
- 공모 시 필수조건, 권장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표 II-5〉 주요 기관 공모사업 분석

구분	국가보훈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	<p>나라사랑 테마활동 사업</p>	<p>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p>	<p>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p>										
유형	<p>청소년의 꿈과 끼가 '나라사랑' 이란 주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중립형(4시간 이상) 체험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일제 강점하의 독립정신 • 호국-625 전쟁 등 국가위기 시 호국정신 • 민주-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정신 • 국가자긍심 함양 • 역사 바로알기 • 대한민국 하나 되기 • 체험활동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p>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프로그램 ("다시 청소년이다") • 창의융합프로그램 • 청소년주도형프로그램 <p>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변화·개선 • 사회구성원 관계개선 • 청소년 권리 개선 <p>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p>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p> <p>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p>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 여성사회참여 확대 • 여성폭력 예방 및 • 사회안전망 강화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지원 규모	<p>20여 개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당 1,000만원 내외 지원</p>	<table border="1"> <tr> <td>기획</td> <td>5~12백만원 이내</td> </tr> <tr> <td>창의융합</td> <td>5~12백만원 이내</td> </tr> <tr> <td>청소년주도형</td> <td>5~10백만원</td> </tr> <tr> <td>참여</td> <td>1.5~3백만원 이내</td> </tr> <tr> <td>유해환경 개선</td> <td>10백만원 이내</td> </tr> </table>	기획	5~12백만원 이내	창의융합	5~12백만원 이내	청소년주도형	5~10백만원	참여	1.5~3백만원 이내	유해환경 개선	10백만원 이내	<p>사업별 최대 2천만원 (권소사업 사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p>
기획	5~12백만원 이내												
창의융합	5~12백만원 이내												
청소년주도형	5~10백만원												
참여	1.5~3백만원 이내												
유해환경 개선	10백만원 이내												
특징	<p>자부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p>	<p>활동보충 분야 최우수프로그램 선정 기관 가산점(5점) 부여</p>	<p>자부담 비율 10% (국고보조금의 10%)</p>										

4. 강사양성과정 분석

1) 강사양성과정 분석 개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강사양성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함.
- 아동, 청소년, 시민 대상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강사양성과정을 분석함.

2) 강사양성과정 분석틀 구성

-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분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강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강사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함.
- 강사양성과정에 대한 안내 자료와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유사기관 분석 결과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¹⁾은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인 지정책 관련 공무원, 성폭력예방 등 관련 전문강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02년 11월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와 여성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양성평등교육원은 전문강사 양성과정(성폭력예방·성희롱예방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관련 지식)과 성인지정책 교육과정(성인지력향상, 성인지 예결산 및 통계과정 등)의 두 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있음. 이를 교과목 강의 수업, 토론실습 등 참여형 수업, 강의시연 등의 방법으로 오프라인(양성평등교육원 집합교육)과 온라인(양성평등교육원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일정은 최소 1일 7시간에서 최대 5일 30시간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경우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거나, 외주용역을 통해 보급하고 있음. 교육평가는 출석 및 시험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문강사 과정의 경우는 양성평등교육원 내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강의시연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임.

<표-1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교육 현황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성공무원, 군공무원, 법무부 공무원 등) ◦ 전문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²⁾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상담 및 보건교사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육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입문과정, 성인지 관점과 섹슈얼리티 인식론, 현안 문제인식 등 각 과정별 기본지식 ◦ 전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예방·성희롱예방·성매매예방·폭력예방 통합교육·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영역별 전문지식과 현안과제 관련 이론과 실제 학습 ◦ 강의력 향상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자 이해 및 내용설계, 강의실전능력 강화 등 ◦ 강의실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강의시연 및 피드백 ◦ 재위촉 보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주제 관련 법령·사례, 강의클리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위촉자 통합교육(강의시연) ◦ 전문강사 외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정책교육(성인지력향상과정, 양성평등정책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인지 예·결산 및 통계과정)
교육방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교육진행(집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식 :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교과목 강의 - 참여식 : 토론·실습·발표의 형식으로 피교육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진행 - 기타 : 시청각·강의시연/피드백 등 전문강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 제공 ◦ 온라인 교육진행 : 사이버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양성평등교육(http://egenedu.kigepe.or.kr/), 원격교육연수원(https://egenteacher.kigepe.or.kr/)을 통해 강의, 과제 제출 등이 이루어짐.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다운받아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 ◦ 필요 시 외주용역을 통해 교재 개발 및 발간
교육일수/ 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의 과정별로 짧게는 1일 7시간에서 길게는 5일 30시간까지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함.³⁾
교육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률 및 시험, 과제에 의해 평가 ◦ 강의시연의 경우 강의내용·방법·효과, 강사태도 등에 근거하여 평가(내부교수 및 외부전문가에 의해 평가)

○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양성평등기본법(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제19조,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기반하여 근로자가 성평등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문화 개선으로 상호 협력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조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성희롱예방교육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 2017).

2) ①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양성평등 및 교육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여성시민사회 단체에서 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등의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③ 여성 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

- 교육대상은 지원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로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양성평등 및 교육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관련 상담 등의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임.

○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기반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전 국민의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하여 조기개입에 대한 전문지식, 현장 적용력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성폭력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성폭력예방정책의 효과 증진 및 사례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 및 강의 실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 2017).

- 교육대상은 일반과정(지원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은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자,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등의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대학, 국공립·사립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성폭력예방 관련 연구·교육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임. 교원과정은 전국 유치·중·고등학교 교원(상담 및 보건교사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임.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기반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건강한 성문화 정립 및 합의수준을 향상하고,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효과적인 성매매예방교육을 수행하며,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

및 강의 실전 능력을 배양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 2017).

- 교육대상은 지원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로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양성평등 및 교육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매매예방 관련 상담 등의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 성매매예방 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임.

○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기반하여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비폭력적인 가정·사회문화를 조성하며,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고,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 및 강의 실전 능력을 배양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 2017).

- 교육대상은 지원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로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양성평등 및 교육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가정폭력상담 관련 상담 등의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 가정폭력예방 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됨.

(2)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이 대상이 되며, 교육방법은 사이버교육, 동영상 교육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초빙 교육 등이 있고, 연간 교육 횟수나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며,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전문강사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되어 있음. 전문강사단 운영을 위해 모집 공고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강사단을 모집하고, 운영기간은 1년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일반인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재직자, 대학생, 공무원 등 수준별로 다양한 개인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본 교육 과정은 대상별로 최정에 사이버 보안 인력 인증 교육 과정임.

(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강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관련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실행 역량을 함양하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청렴교육강사 양성은 교육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공무원 대상, 국민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17).

- 청렴리더십 함양 과정(고위직)은 기관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관리직을 대상으로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은 각 행정·공공기관 소속 고위관리자, 중앙행정부처(고위공무원단),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4급 이상), 교육청(교육장 및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임원 및 CEO) 등이며 매회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음.

- 청렴리더십 함양 과정(학교장)은 학교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학교장으로서의 역할 인식 및 청렴가치 내재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규자 과정공직자로서의 역할 인식 및 청렴가치를 내재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렴관련 법령 및 부패신고사례 등을 통해 부패의 위험성 등을 인지하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공공기관 신규공직자(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우선 선발)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청렴교육 의무화 등에 따른 각급 기관의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행정·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공직자 대상)와 비공직자 및 교육시작일 기준 1년 이내 퇴직예정공직자(비공직자 대상)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은 청렴교육 의무화 등에 따른 각급 기관의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기관 내 반부패·청렴교육 담당자로서 교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교수 역량을 갖춘 청렴교육강사(전문강사)를 선발할 목적으로 청렴교육강사 강의시연 평가를 실시하며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4)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강사

- 통일교육원은 교육대상을 사회적 역할과 수준 등에 따라 통일교육 핵심전달자(교사·전문강사 등), 통일준비 인력(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 외국인 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일반적인 통일교육 외에 전문강사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는 학교·사회단체 등에서 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내용·범위를 살펴보면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과목(국가안보와 통일 등)과 선별적으로 편성되는 전문 과목(통일외교와 국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소양과목(통일인문학)·강의훈련과목(강사의 자질과 리더십 등) 등이 과정별로 필요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내용은 강의식·참여수업·현장견학 등의 교육방법으로 오프라인(통일교육원 집합교육)과 온라인(통일교육원 사이버강의)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교육일정은 최소 1일에서 최대 44일까지 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시수는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경우, 담당 강사가 직접 집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평가는 출석률,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일교육원 발간자료 등을 통해 통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Ⅲ.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의 실제



1. 조사개요
2. 현장 방문 및 심층면접 일정
3. 현장 방문 대상 기관 및 방문 일시
4. 조사내용 및 방법
5. 면접 분석 결과
6. 요약 및 시사점

제 III 장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의 실제 (현장방문 조사)

1. 조사개요

- 일 정 : 2019년 9월 16일(월) ~ 30일(월)
- 대 상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총 11개소 중 6개소 - 2019년 1월에 지정된 1개 기관과 11월에 지정된 2개 기관 제외, 연구진과 법무부의 판단 하에 특성이 다른 2개 기관 제외)

2. 현장 방문 및 심층면접 일정

- 본 연구에서는 8월 초 연구진 회의를 통해 면접질문지를 작성하고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 수정, 보완 후 8월 중순 면접 질문지를 확정하였음.
- 조사 기관에 사전 연락 및 방문 일정을 합의하고 요청 시 면접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음. 면접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이 소요되었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후 녹음을 실시하였음. 단, 동의를 구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공동연구원 2인이 메모하여 내용을 교차 분석하였음. 면접 후 바로 면접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 면접 스케치를 진행하여 공동연구원끼리 이를 공유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녹취록 전사하여 상호 교차 분석하였음.

<표 III-1> 현장 방문 심층 면접 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비 고
8월 1일~8월 15일	면접 질문지 작성 및 검토	
8월 16일~8월 20일	면접 질문지 확정	
8월 20일~8월 31일	조사 기관 사전 연락 및 방문 일정 확인	
9월 1일~9월 5일	조사 기관 면접 질문지 사전 제공	
9월 6일~9월 30일	조사 기관 방문 및 방문 자료 정리 (면접 예상 시간 : 약 1시간 내외)	

3. 현장 방문 대상 기관 및 방문 일시

- 현장 방문 심층 면접 기관 및 방문일시는 <표 III-2>와 같음. 9월 18일 A기관과 D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1일 F기관 방문을 끝으로 현장방문 및 관계자 심층면접을 마칩.

<표 III-2> 현장 방문 심층 면접 기관 및 방문일시

연번	기관명	최초지정일	방문일시
1	A기관	2010. 1. 1.	9월 18일
2	B기관	2010. 1. 1.	9월 26일
3	C기관	2013. 12. 16.	9월 26일
4	D기관	2015. 4. 15.	9월 18일
5	E기관	2010. 1. 1.	9월 24일
6	F기관	2016. 1. 1.	10월 1일

4. 조사내용 및 방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 연구를 위해 현재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법교육 사업, 인적자원, 사업예산,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 확인함.

1) 조사내용

- 법교육 사업 관련 : 주요사업 및 실적, 법교육 역량
 1. 법교육 진행여부와 진행에서의 어려움
 2. 법교육 사업 비중, 법교육 관련 사업 및 실적
 3. 기관의 특장점과 과제
 4. 특화사업, 공모진행사업, 공모진행 경험

5. 법교육 사업 협력 경험
6. 하고 싶은 사업과 이에 필요한 예산
7.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확대 여부 및 방안
8.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법교육 인적자원 관련

1. 법교육 관련 업무담당 인적자원의 구성
2. 법교육 인적자원의 법교육 관련 경험(경력)
3. 내부 강사자원의 활동여부 및 경력
4. 외부강사 자원확보 방법, 강의경력, 강사비 지급방법 등
5. 강사 파견 시 모니터링 및 평가, feedback
6. 로에듀 인지 및 활용여부
7. 법교육 인적자원(강사 포함)의 양성 및 유지 시스템
8. 법교육 인적자원(강사 포함)의 운영의 장점과 단점
9. 법교육 인적자원(강사 포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 법교육 예산 등 자원 관련

1. 전체 사업 예산 중 법교육 사업 예산 비율
2. 법교육 사업 예산의 출처 및 예산마련방법(예) 공모사업, 자체사업, 기업후원 등 시설 및 기자재 확보상황
3. 법교육 사업 진행을 위한 전용 공간, 교재, 기자재 확보 및 활용방법

○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추가 질문

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강점
2. 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기관의 노하우

2) 조사방법

- 현지방문 조사 및 심층 면접(field research & in-depth interview)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법교육 수행 설비 및 공간적 환경, 기
자재 등을 파악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법교육 실시 현황 및 운영 현황, 인력 관리, 운영상의
한계점 및 발전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함.

5. 면접 분석 결과

1) 법교육 사업 관련

- 법교육 진행여부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들은 법무부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전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받기 이전에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중략) 창립이후
부터 해왔던 그런 법교육, (중략) 계속 해왔죠. 지금도 하고 있고 (A)*

*법인이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중략) 현재 법인 산하기관에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
고, 매년 방학 4-6차시 과정의 청소년 법탐험 교육 '마법나라 법 탐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
어요 (중략)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인증을 받았으며, 참가청소년
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명의 수료증이 제공되죠. (B)*

- 법교육 진행에서의 어려움
 - 법교육 진행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담인력의 부족임.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가 법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까지 전담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민간법

문화진흥센터가 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채용(인건비)을 요구하고 있었음.

-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에 따른 지원의 부족함을 얘기함. 법교육 예산 및 사업 진행비가 부족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법교육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민간에서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었음.

- 또한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민간법문화센터의 특성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법교육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음.

제일 좋은 것은 예산과 인력이 되면 원래 연구요원을 따로 두는 게 법교육 기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연구만 딱 하고 하는 건 없어요. 대부분 그 강의를 맡으신 분들이...(중략) (C)

예산이 어렵구요. 이런 교육에 유관기관 협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중략). 혜택이 없는 거죠. 교통비도 지급이 안되고. 당연히 그분들은 교통비 받을 생각도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교육이 필요한 경비정도는 국가에서 나와야죠. 안 배울 사람들은 말고, 배울 사람들은 지원해줄게 라는 정도의 어떤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내 돈 내고 배운다는 건 잘못된 거 같아요. (D)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이니까, 인적인 자원에 조금 더 확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한계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확대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 같은 게 있죠. (중략) 더욱 더 지역연계, 전국 단위 활성화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

○ 기관 특장점에 부합되는 법교육 수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을 자체 법인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및 부처와 연계하

여 법교육을 운영하고자 부단히 노력 중이었음.

- 기관의 목적 및 목표에 따라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상(청소년, 시민, 다문화 등)과 법 관련 분야(생활법 및 가족법, 재비행 예방 등)에 맞춰 법교육을 진행 중임.

77년부터 저희 목요법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77년이면 벌써 했수만 해도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법교육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그 기반, 인프라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상을 그 동안 여의도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저희가 바꾼 거거든요. (중략) 여의도에 나가서 축제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쉼터라든지, 아니면 뭐 1366 센터에 계신 상담원이라든지, 쉼터 뭐 이런데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특수지역에 있는 법교육도 하고요, 일반인 대상도 하고. 대상도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A)

초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학교 법교육도 하고, 또 법률구조 요즘 직장체험 많이 하잖아요. 직업체험. 그래서 초중고생들이 여기 와서 모의재판 같은 것도 하면서 사실 직업체험의 일환이지만 법을 배우고 가요. 법률 구조라는 게 뭔지, (중략) 사실 법률구조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 홍보도 되지만 또 교육도 필요하시니까 교육도 가고 해서 수혜자가 클라이언트 구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상담하는 상담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교사까지 사실 안 하는 게 없어요. 노인은 노인대로 해드리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사실 저희 법교육은 여기 다 안 담아서 그렇지 저희가 굶직한 것만 넣은 거지 실제 저희 선생님들이 강사 파견으로 기관에 가는 건 더 많은 거예요. (A)

어린이로스쿨 운영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보호소년 대상 재범 예방 법교육 (20시간 중 8시간), (중략) 보호소년 보호자 대상 법교육, 기소유예 재범 예방 법교육, 대안학교 학생 대상 법교육 캠프 등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로스쿨_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연계 운영을 열심히 했어요. (F)

2011년 6월 3일에 개소했거든요. 개소해서 처음에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2012년도 8월 달에 북한이탈주민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취약계층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우리가 다문화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북한 하나원에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그런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게 되었고, 한번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하면서 그때 2013년도에는 한번 하고나면 또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정 수준이 올라갈 때 까지 매해 개선을 했거든요. (C)

그것도 대상의 변화가 있지만 법교육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 주력을 이룹니다. 법교육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들은 아니고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대상 확대, 대상에 대한 고민, 계층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의 다양화.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 방법 내지 어떤 법교육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캐치해서 이전에 뻥히 했던 사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대상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들을 하죠. (E)

법인 전체 사업의 내용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법교육 사업의 비중이 달라져요. 법인의 고유 사업 중 인권교육, 저작권 교육 등을 법교육 범주에 포함한다면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성교육, 인권교육, 저작권 교육 등을 법교육 범주와 별도로 본다면 순수 법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부분에 해당함. 법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는 법인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현재는 법인 산하기관에 자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비중의 높지 않죠. (B)

생활법, 가족법 관련해서 가장... 저희 전문적인 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가족법과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 펼쳐서 그런 쪽에 법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더 확장시켜서 노숙인이라던가,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이라던가, 파산면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원직무연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확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중략) 가족법을 법교육 한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죠. (A)

학생들이 오면 교육도 나오는 선생님들 숫자가 대단히 많고, 저희는 모의재판을 한다고 하면 벌써 법복부터 준비되고 이미 저희가 만든 자체 대본이 다 있고, 거기 붙는 선생님들이 벌써 몇 명이예요. 여긴 직원들이 있으니까 (A)

연구 쪽도 이제 주로 콘텐츠 위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위주로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근 인력을 뒀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강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제,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재 이런 것들에 대한... (E)

청소년 대상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법나라 법 탐험 교육'은 여성가족부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법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사회참여형태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법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함. 비행청소년 대상의 법교육이 아닌 일반 청소년 대상의 시민성 함양 법교육을 운영함. (B)

○ 특화사업, 공모진행사업, 공모진행 등의 경험 여부

- 법무부, 교육부 등을 통해 법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공모사업에 대한 의지만 갖고 적극적으로 입찰 응모하는 부분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지금까지 힘들게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노고를 알아주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함.

공모사업은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로스쿨 운영 (공모사업),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법교육 사업 운영. (F)

그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중략) 공모사업 들어가려면 필요한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요. (중략) 사업이 쉽지가 않고, 저희들 외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현직 교수들이니까 다 바쁘잖아요.

법조인들 또 아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스케줄들이 있죠. 변호사들의 같은 경우 다 재판 스케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추가로 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D)

일반 청소년 대상의 법교육, 지역사회 참여형 중심의 법교육과 청소년 대상 법교육 캠프 운영 등을 운영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법교육 사업을 받은 적은 없어요. (B)

○ 향후 전개하고 싶은 사업과 이에 필요한 예산

-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의지가 있음. 특히나 법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함.

최저시급으로라도 해서 주 몇 회 이런 식의 그 정도에 인건비를... 사람을 전문강사는 쓸 수 없지만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서류작업이든 할 수 있는 최저시급정도에 주 5일 근무 안 되면 주 3일이라도 책정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신다면 공모를 하던 뭘 하든 좀 더 저희 노하우를 녹아내려서 더 공유할 수 있는... (중략) 거기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낼 수 있으니 노하우는 있어도 자원 아니면, 저희가 나눌 시간도 없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눠가지려면 그만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노하우를 충분히 내릴 수 있지만 (A)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산과 인력이 증대되었을 때 확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조금씩 다 해봤거든요. 물론 주력은 다문화나 드림스타트로 취약계층에서 주요로 하고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조금씩은... 우리가 노인도 하고 있고 청각언어장애인도 해봤고요. 다 조금씩 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거기에서 확 늘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분들에게는 법무부장관의 명목이 있는 수료증 정도 나온다는지. (D)

- 예산이 확보된다면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도심형 솔로몬 로파크”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싶어요. 대전 및 부산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도심형 솔로몬 로파크”를 운영할 수 있죠. 정기적인 청소년 대상 법교육 과정 운영(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청소년 법고을 학당) 예산이 확보된다면 청소년 대상 특화된 ‘청소년 로스쿨’ 또는 ‘청소년 법고을 학당’과 같이 브랜드 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하고 싶죠. (B)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확대 여부 및 방안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것을 요청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없애는 것이 좋음. 만약 확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양적인 확대보다 내실화에 보다 중점 (F)

확대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중략)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법문화진흥센터의 타이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순수하게 지금까지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타이틀이 생기는 순간 변질되지 혹은 오염될 확률이 높다... (D)

현재와 같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 되요.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없애는 것이 좋음. 만약 확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B)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인건비 및 행정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 보장을 요청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협의회 구축 등을 통한 소통체계로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요구함.
- 법무부뿐만 아니라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지원을 필요로 함.
- 법무부에서의 강의 수요처 발굴 및 홍보 지원을 요구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평가체계구축을 통한 엄격한 자격 관리 및 운영, 심사 등을 요청함.

인건비 지원(연봉 계약직, 보조원 수준의 행정지원 등 담당), 다양한 홍보(법무부에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홍보 지원), 온라인 콘텐츠 업데이트, 법무부에서 수요처 발굴하여 연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권역별로 의뢰 연계, 소통구조(실무협의회) -> 네트워크 체제 구축,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가지고 정보 교류, 실무협의회 등 협의구조 요청,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관 박람회처럼 시청 광장에서라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부스 홍보, 캠페인 등 연례적 행사 지원 (A)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나 인센티브 필요해요, 그동안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에 따른 이점 부여 예를 들면 공모사업에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홍보, 공신력 있는 섭외 및 매칭,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관계자 모임, 정보 교류, 법교육 및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전문성 인정, 그에 따른 대가 (F)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신뢰회복_불신이 높음.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소통 체계 마련 - 관계자 협의회 또는 정기적인 모임,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 실제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점검,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확대 방안(민간의 다양한 기관의 참여 방안 마련),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분야별 영역 확대 방안 마련,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평가 체계 구축 - 재정시 엄격한 심사 과정 마련,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C)

2) 법교육 인적자원 관련

○ 법교육 관련 업무담당 인적자원의 구성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법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연계를 통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음.
- 법학 전공의 강사진과 교육 전공의 강사진 two-track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민간법문화진흥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 법학 전공의 경우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박사 등으로 강사풀을 구성하고 있음.
- 자체 내부 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경우, 외부강사를 연계하여 법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함.

법문화진흥센터를 위해서 오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우리 상담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상담소에서 일을 하려면 법도 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지금 일단 법교육이 다 가능해야 되고 상담도 하지만 (A)

저희가 맡는 상담횟수가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슈퍼비전의 횟수를 훨씬 넘어요. 저희는 풀타임으로 10시부터 4시 반, 5시까지 상담을 하고, 한 사람이 맡는 케이스스터디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 시간의 사례를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을 그냥 몇 번에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 기관에 입사함과 동시에. (A)

2018년도에 강사가 16명 정도. 필요하면 외부에 있는 인력풀도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중략) 100인변호단... 600여명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부탁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A)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일단은 순수 교육 지원요원? 7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저희 법문화센터에서 법률상담해서 차량으로 법률 상담하는데, 교육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교육 할 때. 버스가 접근성이 어려운데 가서 상담을 해주는 게 기본 취지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 원격교육을 할 때는 강의를 한 시간 하고 무료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

거든요 (C)

어린이로스쿨을 통해 전국적으로 64명의 강사 양성. 현재는 약 20여명 운용 직원 중 대표(고성혜 박사)와 정진희 연구원(박사)이 법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단, 어린이 로스쿨을 통해 자체적인 법교육 강사 풀 구성, 사업 중단 후, 일부 강사 중심으로 법교육 사업 운영 (F)

법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적자원은 사무국장과 법교육 담당자. 대부분의 법교육 관련 담당자는 청소년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청소년지도사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히 법관련 전공자는 없음. 법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시, 법관련 전공자(법교육 강사) 또는 법조인(변호사)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음. 법교육 관련 강사자원은 외부 강사가 담당, 내부 강사자원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B)

74명이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가 27명이구요, 일반직이 47명인데요. 변호사님은 당연히 법을 전공하시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직은 법대를 대부분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 시험을 쳐가지고 공채된 분들이고 법률상담을 계속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집행 이런 걸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은 일단 있다고 보여 지구요. 그런 분들 중에서 강의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 번에 한 10명 내외 정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명 할 때도 있고 그래서 10분을 총.. 정식으로 할 때는 10명 내외로. (C)

저희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요. 사법교육원의 자문위원들이 몇 명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말씀드린 대학의 교수 분들이고. (중략) 강의 퀄리티도 좋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좋고 (D)

○ 법교육 인적자원의 법교육 관련 경험(경력)

- 5년 이상의 법교육 경력을 지닌 강사풀을 운영 중임.
- 기관의 주 사업이 법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법교육 관련 경험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

법교육도 가능한 사람들의 역량정도가 되는 거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10, 20년 다들 경력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이론 지식 플러스, 현장체험이 있으니까 가서

케이스마다의 상담 이런 부분이 다 되고 여기서 저희가 내부의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의 선생님들도 있고 지부 선생님들도 있고, 일반인들.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강사의 수준을 이미 습득을 하죠. 기술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다. (A)

박사 및 교수로 강사진을 운영 중임 (중략) 필드에서 진짜 오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심리 쪽이나 복지 쪽에... 그런 분들을 위촉한 적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꼭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위를 갖고 현직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부탁을 드려야 기본적인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다... 저희 교육을 하다보면 의외로 고학력자들이 꽤 있어요. 어떨 때는 의사도 와 있고, 변호사도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요. 상담이나 심리 쪽 필드에서 일하신 분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면 일정수준의 강사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D)

법교육 관련 인적자원 중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참여, 담당직원은 2015년부터 참여, 그러나 주 업무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행으로 법교육 관련 경험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B)

○ 외부강사 자원 확보 방법, 강의경력, 강사비 지급방법

- 채용된 직원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강의비를 지급하지 않음.
- 출장명목의 교육비를 지급함.
- 따라서 강사비가 10만원 내외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

강사가 다 무료로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실제 그 교육비는 강사비가 전혀 안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법교육 하면 사실은 강사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다 무료로 나가서 합니다. (A)

각 회계에서 출장명목으로 지급합니다. 그건 교육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잘 안올려고 하죠. 솔직히.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안 오니까 법문화교육센터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중략) 농협에서는 1회 나가면 20만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받으면 저희들은 여비를 지급안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받아서 지급하는데 여비 더하기 5만원에서 7만원. 1시간 하면 5만원, 2시간 이상하면 7만원. 그것도 합치면 11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멀리가면 더 받고. (C)

조금씩 다르죠. 인원이 얼마 안모였으면 그분들이 내시는 그 강의비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D)

○ 강사 양성 시스템 관련

- 법교육사업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있음.
- 외부강사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법교육 경력이나 법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 구성함.
- 별도의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많음.

어린이 로스쿨을 통한 법교육 강사 양성. 강사 양성과정 체계적으로 진행. 현재 중단 된 상태 (F)

강사자원은 법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고 있음. 강사는 약 10년 이상의 경력. 법관련 전공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관련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음. 법조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로 지인을 중심으로 법교육 강의를 의뢰함. (B)

○ 강사 파견 시 모니터링 및 평가, feedback

- 만족도 등의 간단한 프로그램평가를 진행 중임.
- 강의 및 강사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반영이 어려움.

모든 프로그램들은 간단한 평가. 강사평가는 받는데요. 사실 나가서 하는 대단위로 한번에 500명, 600명한테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요. 다만 저희 설명을 듣고 참여한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재미가 없었으면 그냥 갔을 테니까. (중

략) 다음에 법률구조 체험의 경우, 2시간 정도 와서 하는 건 학교에서 소감문을 써요. 기관방문에 대한 소감문을 쓰거든요. 그걸 받아요. 그래서 평가가 되고요. 또 미혼모라던 지, 노숙인은 자체평가지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서. 5번부터 1번까지. 척도로 하는 거. 간단한 게. 바라는 게 뭔지. 프로그램마다 할 수 있는 곳은 만족도 조사지를 받고 할 수 없는 곳은 소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양적 인건 안되고 질적인 걸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A)

설문지에 과목별로 점수를 다 일일이 체크하게끔 해서 1년 쪽 보면 이 과목에 평균이 얼마다 다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또 다문화 가족 1박 2일로 온 애들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약간 프로그램을 개편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안 좋은 것은 폐지를 하고 다른 거로 계속 조금씩... (중략) 돈을 많이 안주면 잘하는 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되고 차라리 폐지하고, 체험이나 다른 걸로 채워서 하고난 뒤 법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바뀌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C)

전국 규모의 강사진(대구, 부산, 충남 등), 현재는 수도권과 춘천 위주, 강사 간담회 지속하고 있음 법학 전공자와 청소년 프로그램 전공자 선발하여 법 전문지식에 관한 내용 지속 교육, 법학 전공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교육 제공, 강사비는 1시간에 10만원, 교통비 없고, 오지는 제공, 1박 2일 형태의 캠프를 3~4번 진행,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 관련 내용 발생 시 또다시 교육 (F)

알고 있으나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음.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B)

그때그때 다르죠.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쓰는 경우도 있고. (D)

○ 로에듀 인지 및 활용여부

- 다양한 기관에서 로에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활용이 많음. 이미 관련 콘텐츠와 영상을 접한 피교육자가 많아서 교육의 흥미를 떨어뜨림.
- 로에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 자체 양성 시스템과 강사 유지를 위한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함.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없어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 양성시스템의 경우 일반교육, 특성화교육, 강의시연,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음.

저희가 실제로 거기서 표준화된 여러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번 이거 좋겠네 하고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애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개발한 걸 가지고 가야지 법무부에서 공개된 건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이 반복적이고 많잖아요. 애들이 한번이라도 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중략) 왜냐하면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할 만들 여력은 없으니까. 자체 동영상 이런 거 소재를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공개된 자료들은 이전 강사들이 쓴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체 개발한걸 갖고 가지 제가 만들어서 음악도 노래도 넣고 이렇게 하지.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은 강의 표준화된 갖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썼을 수 있다는 거죠. (A)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이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를 활용 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3년 연속 99점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강사를 활용할 때 우리가 특성화 교육을 강하게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를 못합니다. 엄격한 우리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냥 교육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면 되겠지만, 만족도가 있으니까 유지하려고 보니까 그런 점에서 힘들죠. (C)

책자. 청소년용은 만화로 된 것도 있고 그런 책자들을 활용하죠. (D)

1년에 한번. 교육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내강사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외부에 한국생산성본부라든가... 강사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이 사람들을 2박 3일로 기본 강의를 하는데 가 있더라고요. 교육료를 받고... (중략) 강사가 초빙되면 1박 2일, 2박 3일하면 2-3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강사의 기본자세를. 그건 일반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1차로 시킵니다.(중략)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 특성화 교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중략) 시연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 해주고... 또 용어를 부득이하게 법률 용어를 쓰면 반드시 쉽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활용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죠. 그리고 참관 수업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수업할 때 와서 자기 과목을 맡은 게 있으면 한번 보는 거죠.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특성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기본, 그 다음에 특성화, 참관 수업이 세 번째.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를 양성시키는 기본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라든가. 강사 할 때에 모여서 특강을 듣는다든가. 의견교환을 하고, 강의를 해보니까 이런 노하우라든가.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본부에 또 개별적으로 파워포인트 1박 2일 교육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보내주고, 좀 심화과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C)

3) 법교육 예산 등 자원 관련

○ 전체 사업 예산 중 법교육 사업 예산 비율

- 대부분의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전체 예산의 10%내외를 법교육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이 감소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음.
- 사업비의 일부는 기금 등을 활용하지만 법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참가자가 부담하기도 함.
- 민간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음.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운영이나 법교육사업이 재단이나 기관의 주력사업이 아닌 경우의 사업운영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함.
-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사업의 비중은 저희가 크게 세 개의 틀이니까 3/1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산은 거기에는 못 미치죠. (중략) 한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구조 하는 경우는 이제 소송 구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변호사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몫이 크죠. 교육사업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사가 다 무료로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실제 그 교육비는 강사비가 전혀 안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법교육 하면 사실은 강사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다 무료로 나가서 합니다. (A)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법인에서 발간한 연구물, 또는 보고서 등이 1회성 연구나 개발로 끝남. 청소년 영역에 법교육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법무부와 소통이 되지 않거나 관심을 받지 못해요. (B)

전체 법률구조에서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천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에 법문화교육비용은 2억 8천 8백, 3억 정도 되지만 법문화센터 시설관리 등 이런 거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 라고 봐야겠죠? 제 계산이 정확하지 않지만... (C)

한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요. 일 년에 3억. 왜냐하면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 강좌가 10군데에서 펼치면 한 강좌당 몇 명씩 투입되거든요. 100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수료증 만드는 거, 간식 제공하는 거 기타 등등해서 들어가는 거 있고, 사무실 유지하잖아요. 사무실 월세, 관리비라든지. 또 직원있으니까.. 공과금 이런 거 다 해서 보통 그 정도. (D)

전체 예산의 1% 정도 내외예요 (F)

사업비를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하나면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비를 냅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받아서 우리가 책자하고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심지어는 노트, 볼펜까지도 저희가 다 제공을... 남으면 안 되는... 간식 제공까지도 다 하고 강사분들 현직 교수들이지만 교통비 이상의 실비가 나가기 어렵죠. (중략) 한 곳에서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신다 하면, 10번의 강의를 합니다. 10주 강의. 그리고 한 2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뭐 20번이라고 해봐야 400이잖아요. 10개 강좌라고 하면 교수가 한 번 갈 때 40만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간식비, 교재, 노트, 볼펜까지 빼면 KTX가 가는데 보통 한 10몇 만원 들어요. 본인 차량 이용해서 서울 살면, 광명역이나 서울역까지 가서 주차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또 택시타고 하면 교통비만 20정도 이상 들어요. (D)

○ 법교육 사업 예산의 출처 및 예산마련방법(예) 공모사업, 자체사업, 기업후원 등

- 산하기관의 보조금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음.
- 재단의 예산이나 기부금을 활용함.

이사장이 사비를 매년 조금씩 출현하고, 또 일반회원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월 1만원, 월 10만원 내는 분도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그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D)

주로 산하기관에 보조금 사업임(구 보조금 사업) (B)

보조금 사업에서 일부를 활용해요 (A)

○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상황

- 법교육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운영하지 않음.
- 강의실 및 상담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법교육 관련 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도구를 개발하여 활용 중이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우리가 했던 일이니까 77년부터 해왔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저희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개발을 하죠. (중략) 개발이라는 게 그런거예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담자들 만났을 때 어떤 욕구가 있지? 그러면 아 이런 교육이 되겠다 하면 저희가 쉽티에 연락해서 이런 교육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모으실래요? 저희 그러면 무료로 나가요. 성사가 되면 가는 거고 안되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항상 그런 일들을 하는거거든요. (A)

저희는 있죠, 그렇지만 하지만 내부적인 거죠. 모의재판도 있고 나가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PPT 등이 있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A)

있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할 수 없고, 교수들이 가는 게 편하니까. 저희가 아마 발생시키는 비용은 거의 KTX 비용이 8~90% 될 거예요. (D)

법교육 관련 교재는 청소년 법 탐험 교육 강의자료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법교육에 필요한 법복 등은 구비함. 법교육 포스트플레이 도구는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솔로몬 로 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교육 포스트플레이와 유사함. 산하기관 내에 강의공간이 있으며, 법교육 운영 당시 사용함. 단, 법교육 전용공간은 아님. (B)

6. 요약 및 시사점

- 법무부가 제공한 로에듀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법교육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거나 교육도구를 개발하여 활용 중임.
- 일반적으로 전체 사업의 10%를 법교육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의 보조금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이나 기부금을 활용함.
- 법교육 관련 예산은 기관의 주력사업에 따라 예산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
- 법교육 진행 후 만족도 등의 간단한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 중임. 강의 및 강사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반영이 어려움.
- 변호사, 법학관련 교수, 박사 등으로 강사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연계하여 법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건비 지원(연봉 계약직, 보조원 수준의 행정지원 등 담당), 홍보채널 확보(법무부에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홍보 지원), 온라인 콘텐츠 업데이트, 법무부에서 수요처 발굴하여 연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권역별로 의뢰 연계, 소통구조(실무협의회) 마련,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가지고 정보 교류 등을 요청하고 있음.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현재 지정된 기관의 지원 확대 및 민간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됨으로써 갖을 수 있는 잇점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IV.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문제점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기본방향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영역별 추진 사업(안)



제 IV 장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문제점

1) 현행 법교육 사업의 문제점

- 중장기 법교육 사업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부재
 - 법무부 조직 개편 및 주력 정책 사업 변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일관적이거나 지속적인 법교육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아직까지 법교육 사업에 대한 중장기인 종합계획의 부재, 조직의 급작스러운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 위주, 단기적인 사업 계획 및 추진에 따른 사업의 양적 증가, 지속적인 법교육 브랜드 사업이 부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법무부가 정책조직이 아닌 실행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지니고 있음.
 - 법교육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나 지났으나 현재 법교육사업은 2008년 법교육지원법 통과될 당시의 법교육 사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
 - 법교육지원법의 경우 제정 후 단 한 차례의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법무부 법교육 예산의 한계
 - 현재 법무부 법교육 예산은 연간 약 30억 내외, 이중 솔로몬 로파크 운영비 약 10억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비는 20억 내외임.
 - 2013년 37억이 편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대부분의 법교육 예산이 주로 솔루션 구축과 법교육 행사(대회) 예산에 편중되어 있음.
 - 추가적인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법무부 주도의 법교육 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한계
 - 한정된 예산과 인력, 로테이션 구조로 인한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무부 중심의 법교육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운영의

한계점이 발생함. 이는 법무부 주도에 따른 법교육 사업의 성장·확산에 있어 제한이 되기도 함.

- 법무부 법교육 담당부서는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과 법교육 전반 지원이 핵심 주요 역할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사업을 운영·추진하면서 정책이 아닌 사업부서로 전략하여 이에 따른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법무부 사업 중 일부 사업(어린이 로스쿨,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일부 기관만 참여하거나 법교육 실시의 경험이 부족한 민간단체에 입찰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 법무부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민간 영역에서도 법교육 사업 진행에 따른 이점이나 중요성, 필요성의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한계에 직면되고 있음.

○ 최신의 트렌드 및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교육

- 법교육 사업 중 대부분이 행사성·일회성 중심의 대회 형식이 다수임, 또한 출장 강연 시 주로 학교폭력예방 법교육과 비행예방 법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회 중심의 법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계에 직면함.
- 법지식 전달위주로 법의식 형성이나 법태도, 법행동 등의 변화를 창출해내는 교육적 목적으로서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음.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문제점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성장의 한계

- 법교육지원법이 통과된 이후, 거의 10년 동안 법무부 산하기관을 제외한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11개(2019년 1월 1개 기관, 11월 2개 기관 지정)로 양적 성장의 실패 결과를 초래함.
- 11개 센터 중 형사정책연구원과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2019년 1월 지정된 화성청소년비전센터, 2019년 11월에 지정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부천시 청

소년법률지원센터를 제외하면 현재 총 6개 센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법률상담소는 기존 고유의 법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로서 민간 영역이 아닐 수 있음.
- 또한 9개 지정 기관 중 3개 정도만이 법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희망재단과 청소년교육전략21은 법교육 사업이 주력 사업이 아님.
- 한국사법교육연구원은 시민대상 법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 내부 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비영리 법교육 사업의 한계를 가짐.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10년 동안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받은 곳은 4개 기관이므로 그동안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편중된 사업 현황

- 한국법교육센터는 법무부가 진행하는 대다수의 법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법교육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법무부 법교육 시행사업에 대한 편중도가 높음.
- 법교육 사업이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의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과 한국법교육센터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 차이가 발생됨.
- 한국법교육센터가 법무부의 대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이자 실행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 부재

- 법무부에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에 따른 관리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해 법문화진흥센터로서의 소속감, 자부심, 정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인력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지원이 전혀 없음.
- 단지 지원 물품이나 현관 지원 등으로 인해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실무자의 법교육 사업 진행에 따른 고충이 발생됨, 또한 법무부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으로 인한 번-아웃(burn-out)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실무자의 역량에 따른 사업의 성패가 나타나는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관의 지원도 부재한 상태에서 향후 과연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 성장의 필요성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음.
- 현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서는 그동안 부재했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보상,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고 있음. 보다 많은 민간법문화센터에 대한 확대보다는 현재 이미 지정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보다 확충되길 요구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간 업무 진작을 위한 소통 및 교류 시스템의 부재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간 네트워킹 형성이 부재하여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구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법무부 차원에서의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간법문화센터의 특성화, 교육 콘텐츠의 질 관리, 교수법 노하우 등의 소통 구조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임.
-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줘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의 한계

○ 법교육 전문강사의 중요성

- 법교육 전반에 있어 일반 시민,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접 법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법교육 전문강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나 현재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약 2,000명의 법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법교육 출장강연(Law-educator)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연간 3,000회 출장강연 의뢰가 들어오는 수요를 볼 때 강사당 약 1.5회의 출장강연이 가능함.
-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도 강의해보지 못하는 강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강사의 강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통비도 포함되지 않은 10만원 정도의 최소 강사비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원봉사자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제도 시스템 부재

- 현재 법교육 출장강연제도를 통해 법교육 강사로 등록할 수 있으나 법교육 강사로 인정받기 위한 표준화된 양성 제도가 부재함
- 법무부는 신청 후 해당 분야 전문가(법조인)인 경우 출장강사로 등록함.
- 법무부에서 현재 직접 수요처와 강사를 매칭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법무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 지장의 문제가 발생됨. 법교육 강사의 관리(인원 및 명단, 출강 현황 및 만족도 등) 및 관리 매뉴얼도 부재함 .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서 법교육 강사를 모집·선발하고 있으나 법교육 강사 양성의 교육과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체 양성 및 선발 과정에 의존하고 있음.
- 법교육 강사로 활동 및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 시스템도 부재함.
- 각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사 양성 시스템으로 인한 법교육 강사 제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 혹은 수료증이 부여되고 있지 않아 법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정체성, 위엄성, 소속감이 부재하며 법조인의 경우는 교수법이나 전달법, 교육대상의 특성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이 부재함.
- 법무부 및 한국법교육센터 강사로 편중되어 있으며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서 운영 시 관심 및 인증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4) 법교육 내용 및 홍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 양질의 법교육 콘텐츠 및 업데이트된 강의 내용 부재

- 과거에 개발된 법교육 콘텐츠의 사용이 유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 맞는 업데이트 된 교육 내용이 부재함.
- 동영상 등의 자료도 새로 개발된 최신의 자료이길 희망함.
- 보다 다양한 교육자료, 기자재 등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며 이를 기존 민간 법문화진흥센터에게 공모, 위탁하여 개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수요처 개발 및 대국민적 인식 확산
 - 법무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법교육에 대한 수요처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임 .
 - 법교육 도구 및 기자재, 기념품 및 홍보물 등을 통한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 다양한 기자재 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보다 확대해줄 것을 기대함.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기본방향

1) 센터 활성화 기본방향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현재(As-is)	향후(To-Be)
국가 주도의 법교육 단기, 일회성 사업 중심 법무부 직접 사업 운영 법교육 사업 지정 중심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지원 중심 제한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정 보제공 및 홍보 미약	민간 주도의 법교육 사업 방향 모색 중장기, 지속성 사업 중심 민간 중심의 사업 운영 민간 경쟁 중심(용역을 통한 질적 강화 체제 구축) 법문화진흥센터의 법교육 실행 역량 강화 지원 홍보강화를 통한 법문화진흥센터의 양적 성장 및 영역 확대

※ 법무부 :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중심으로 본연의 역할 강화

※ 단계적으로 법무부 직접 사업의 민간 위탁 추진

※ 민간위탁 또는 용역 추진 시 현)민간법문화진흥센터 가산점 부여 검토

2) 센터 활성화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 사업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영역별 세부 추진 사업(안)

1-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대상 법교육 특화 사업 공모 운영

□ 사업목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역량강화 및 법교육브랜드 가치 제고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법교육 브랜드 구축을 통한 인지도 확보 및 법교육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수행을 통해 기관 및 사업구조를 내실화함.
- 대국민 홍보를 통해 특화된 법교육기관을 알려 법교육을 활성화함.
- 차별화된 법교육사업발굴과 사업모델을 개발함.

	법교육사업	인적 자원	예산 및 지원	기타
현황	지속적으로 법교육 진행	전문강사 운영 내부직원파견	전체 예산대비 10%이내	기관사업

문제점	법교육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됨	고정강사운영의 어려움 강사평가 및 피드백 작업없음	법교육 예산 및 사업비 부족	법교육에 대한 홍보미흡
-----	-----------------	--------------------------------	-----------------	--------------



과제	법교육사업 확대	강사풀 운영 지원 강사플랫폼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 필요	정책성확립과 역할확대 홍보계획 수립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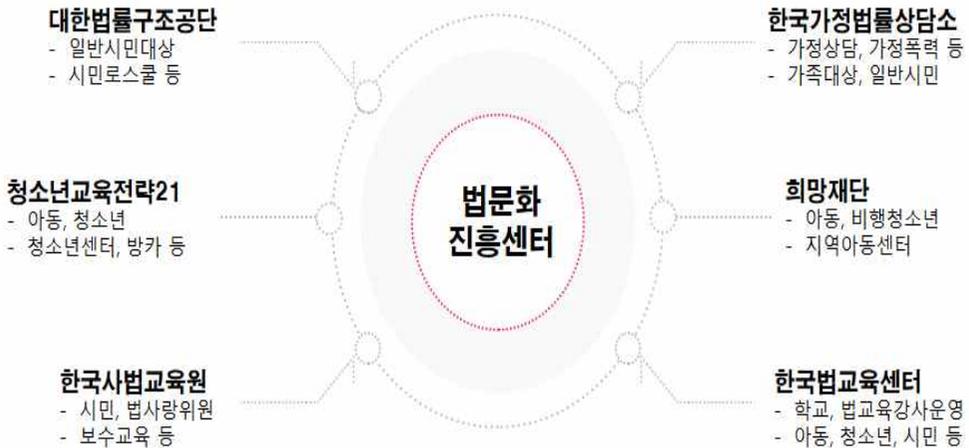
방안	각 센터별 특화사업 운영공모를 통한 지원			
----	------------------------	--	--	--

□ 추진내용 및 방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법교육사업의 전문 Know-how를 보유한 기관으로 인정
 - 법교육의 지속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이 중요한 요인임. 이와 더불어 법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개발 수요도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통해 법교육개발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법교육 운영 및 캠페인 관련 사례 등을 수집하여 내용 등을 검토 후 이를 교육과정의 주제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색하거나 활용하도록 지원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역량강화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지원체계를 구축함.
- 법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자원의 배분, 연계 가능한 자원의 발굴 및 강화
 - 현재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물적·인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교육의 목표달성 및 확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독자적으로 법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사업에 대한 자원을 배분하고 연계 가능한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단년도 중심의 일회성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특화된 법교육사업의 브랜드 구축과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사업 추진 및 지원
 - 법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교육내용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환류 등이 가능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관맞춤형 교육을 통해 법교육프로그램의 성과 등을 측정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강점 분야

구분	주 교육대상	운영 프로그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 일반시민	가정 상담, 가정 폭력 및 관련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시민	시민로스쿨 법교육
희망재단	아동·청소년 (비행청소년)	어린이 로스쿨, 재비행 예방 법교육, 지역아동센터 법교육
청소년교육전략21	아동 청소년	청소년 법교육, 청소년 센터 연계 법교육, 청소년 법 동아리,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한국법교육센터	아동, 청소년, 일반시민	학교 대상 법교육(강사파견), 법교육 강사 운영
한국사법교육원	일반시민, 법사랑위원	시민대상 법교육, 법사랑위원 법교육



□ 기대효과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역량강화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교육을 실시함.
- 장기적으로 민간법문화진흥센터가 독립적으로 법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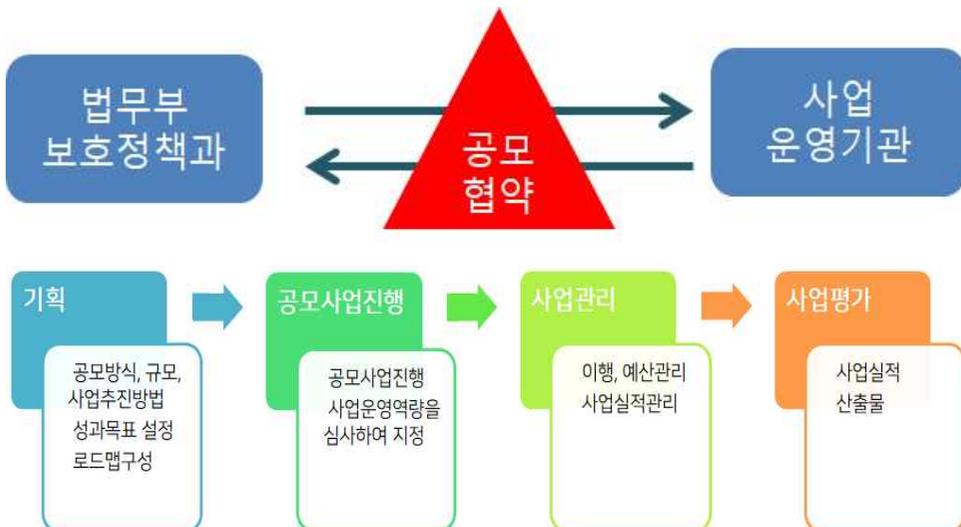
1 - 2 법교육 사업 공모 운영(예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발굴지원)

□ 사업목표

- 예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발굴을 통한 법교육 확산 및 성과 관리
- 예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발굴을 통한 법교육 교류협력
- 예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발굴을 통한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공모형 지원사업을 통한 법교육사업 역량 강화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 추진방향

- 법교육이 필요한 교육대상 발굴 및 대상 맞춤형 교육품질 제고
- 법교육 성과 및 발전방안 공유를 위한 법교육 유관기관 워크숍 등 교류협력 사업 추진
- 법교육 사례집 및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한 법교육에 대한 관심도 확산
- 법교육 전략대상 발굴 및 우수 교육모델 제시를 통해 법교육사업 확산
- 공공기관과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벤트와 관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재 및 교구,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함. 또한 법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도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법교육사업 실효성 확보 및 기관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즉, 지원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기관의 역량강화와 법교육 확산에 두고 기관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육성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사업주관부처와 운영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법교육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각 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법교육 공모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요건, 평가 시 적용되는 세부평가 기준, 공모사업지원금 지급방법, 기관선정, 지원기관의 관리 감독 등 다양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주체와 평가주체가 분리되어야 하며 평가기관은 실질적인 법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이익단체가 아닌 법교육전문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수행해야 할 것임.
- 법교육 사업 공모(용역) 분야

구분	용역분야
제1분야	유아·어린이/청소년 법교육(단, 어린이, 청소년 별도 운영)
제2분야	시민대상 법교육
제3분야	소수계층(다문화, 이민자, 노인 등 법교육), 특수분야 법교육(스포츠, 도박 등)
제4분야	법교육 강사 통합적 양성 및 관리 업무 ※ 법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진행 ※ 예 : 문화관광부 언어문화 개선사업, 민간통일준비 역량강화 위탁사업
제5분야	신규 법교육사업
제6분야	법교육 관련 연구 및 학술대회 지원

□ 기대효과

- 공모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시설 및 단체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예산지원으로 인해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성화된 양질의 법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원동력이 되고, 공모사업의 취지대로 법교육을 홍보하고 교육운영자 및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다양한 법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운영기관의 기획 및 진행 전문성과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음.
- 공모사업진행을 통해 법교육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법과 법의식, 법교육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증진할 수 있음.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포상 계획 수립 및 운영 (우수센터 및 우수인력 포상)

□ 사업목표

- 범사회적 법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단체) 선정 및 시상을 통해 법교육 실천 모범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고 법교육 실천 운동을 확산
- 법교육성과에 기여한 우수센터 및 우수인력을 격려하고 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 추진방향

- 법교육 범국민 확산을 위해 법무부가 주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교육 우수 사례 선정 및 시상
- “성과유도형” 포상을 통해 법교육사업기획, 법교육프로그램개발, 법교육운영, 법교육관련 연구 등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에 대한 포상을 진행
- 대한민국 법교육대상(안) :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참고
 - 시상내용: 부문별 상장 및 상금

부 문	분 야	시 상 수	상 금	시 상 내 역
단체	학교 및 단체	2	500만원	표창장 수여
개인	교사, 강사 등	5	100만원	

- 시상 부문 및 대상 : 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헌격한 업적을 쌓은 민간법문화센터(또는 법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교육을 진행한 개인
- 평가내용

구 분	내 용
인력	법교육강사, 연구원, 관리인력 등
구성	교육내용, 프로그램 구조, 연구보고서 등
기관	법교육사업실적, 홍보성과 등

- 추천방법

구분	추천인	제출 서류	제출 방법
필수	대한민국 국민 (개인)	1) 수상 후보자 추천서 2) 수상 후보자 동의서	E-mail을 통한 제출
	기관,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법교육 기관 등	1) 공문 2) 수상 후보자 추천서 3) 수상 후보자 동의서	전자문서시스템(공문)을 통한 제출 ※ 단, 전자문서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E-mail을 통해 제출

□ 추진내용 및 방법

- 포상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각 추천기관에 통보함. 심사 시, 포상근거 및 포상배경, 정책효과, 포상의 필요성, 주요 포상 대상자의 공적, 전연도 포상운영 실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 포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수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포상대상자 및 기관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인터넷, 우편접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발굴창구를 활용하여 포상이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 발굴함.
- 포상인력과 기관은 공적내용을 공개하여 널리 알리고 법교육관련 기관 행사 등에 초청하여 성공사례를 홍보함.

□ 기대효과

-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 동기를 부여하고, 법교육 발전을 이룩함.

1 - 4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목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실무협의 구조 마련
- 법교육을 추진하는 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법교육 추진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법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민간법문화진흥센터들 간의 연대와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핵심 실무자(국장 또는 부장)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 단순 논의 구조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회의 운영

□ 추진내용 및 방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실무협의회 위원 추천
 -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함.
 -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기관의 추천을 받되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함.
 - 법교육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함.
- 실무협의회 위원 선정 및 구성
 - 명칭 : 법교육 실무협의회
 - 위원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실무책임자 1명, 추천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
 - 운영 : 분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
 - 기능 : 기관별 법교육에 대한 상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
 -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 추진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활용함.

○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운영

- 기관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제안과 공동추진 방안 협의함.
-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 법교육 사업(행사)을 개발·운영함.
- 법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공동 사업을 실행함.
- 공동의 법교육 추진을 통해 민간법문화진흥센터를 홍보함 .

기대효과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소속감 및 정체감, 자부심 향상에 기여함.
- 공동 법교육 사업(행사) 추진을 통해 협력 및 운영 체계 구축에 기여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확대에 기여함.

II - 1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수립운영

□ 사업목표

- 법교육 전문강사의 양성과 자질 향상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위촉 제도 도입 및 정착

□ 추진방향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강사 기준과 교육과정 마련
- 기존 활동 강사와 신규 강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보수교육 체계 마련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교육 전문강사 일반원칙
 - ‘법교육 강사’와 ‘법교육 전문강사’를 구분함.
 - ‘법교육 강사’는 법무부에 인증 없이 법교육을 담당하는 자
 -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무부에서 인증한 법교육 강사양성 전담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위촉을 받은 자
-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 기준

단계	주요내용(안)	비고
대상	- 법교육 관련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법교육 관련 대학 졸업자 중 법교육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법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법교육 관련 학과 : 법학 및 사회교육, 행정학, 교육학, 청소년학 전공자 ※ 법교육 관련 경력 : 교육, 연구, 상담 관련 기관 종사자	
위촉	- 법교육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수교육을 통해 재위촉	

평가	- 출석률 및 과제에 의한 평가 - 강의안 서명평가 강의시연 평가	
기타	- 강사 위촉에 따른 최소 강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법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

- 법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은 법교육 기본과정과 법교육 전문과정, 코칭과정, 평가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법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은 5일 40(35)시간 집합교육과정으로 구성함.
- 법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40시간) 예시는 다음과 같음.

단계	과정	주요내용(안)	시간	비고
1	기본과정	법교육 및 법무부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헌법의 이해, 권리 찾기 등	10H	사이버 과정개발
2	전문과정	대상별/분야별 교육과정 교육주제 관련 법령 및 사례	20H	양성기관 편성
3	코칭과정	강의력 향성과정, 창의적 교수법 등 교육대상자 이해 및 강의실전능력 강화	5H	
4	평가과정	강의안 서면평가 및 강의시연 평가	5H	

○ 보수교육 과정 운영

- 법교육 전문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함.
- 보수 교육과정은 1일 8시간으로 편성함.
- 보수 교육과정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함.
- 보수 교육과정은 서울권(본부), 충청권(대전), 경상권(부산), 전라권(광주) 지역에서 운영함.

○ 기존 법교육 강사의 재위촉

- 현재 법교육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교육 강사는 1일 8시간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함.
- ※ 보수교육은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소속된 강사 대상으로 1회만 실시함.

○ 법무부 추가 사항

- 법교육지원법 내 법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및 자질향상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해야 함.
- 법무부 장관 위촉장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함.

기대효과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제도를 통해 법교육 전문 인력풀 구축에 기여함.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양질 있는 법교육 보급 체계를 마련함.

□ 사업목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구축
- 법교육 분야별 전문강사 양성기관의 체계적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양성기관 확대에 따른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저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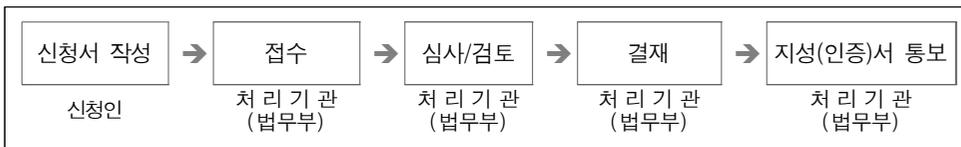
□ 추진방향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지정 기준 마련
- 법교육 전문강사를 양성 할 수 있는 법교육 관련 기관 발굴·지원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부터 시행하여 점차 법교육 관련 기관으로 확대 시행
- 법교육 영역 확대를 위해 분야별·대상별 법교육 전문강사 기관 발굴·지정함
(예 : 어린이·청소년, 가정, 다문화, 시민, 유아, 스포츠 등)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 일반원칙
 - 법무부는 양성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
 - 법무부는 양성기관을 모집·심사하여 지정(인증)함.
 - 법무부는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경비는 1인당 50,000원~100,000원 내 결정, 경비는 교육과정 완료 후 지급

○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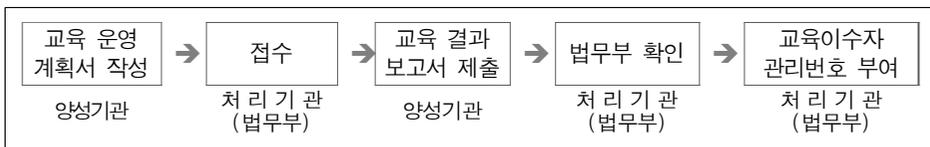


- 법무부는 양성기관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양성기관을 모집함.
- 법무부는 양성기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검토를 실시함.
 - ※ 심사는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또는 별도 심사위원단을 구성함.
- 법무부는 양성기관 심사 결과를 통보함.
- 법무부는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함. 양성기관은 지정은 2년임.
- 양성기관의 재지정은 6개월 전으로 하며,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과정과 동일함.
-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세부적으로 수립함.

○ 양성기관 지정 기준

- 양성 기관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으로 법교육 강사 파견이 가능할 것
 - 법교육 관련 연구기관으로 법교육 강사 파견이 가능할 것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준비사항
 -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교수요원
 -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목별 기본 교재

○ 양성기관 교육 운영 절차 및 내용



- 양성기관은 교육 실시 30일 전에 교육운영계획서를 제출함.
- 양성기관은 교육 후,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 수료자 명단을 제출함.
- 법무부는 교육 수료자에게 법교육 강사 관리번호를 부여함.
 - ※ 법교육 전문강사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함.

○ 법무부 추가 사항

- 법교육 사업의 신규 영역(유아, 스포츠, 탈북, 중독 등) 기관을 발굴·지원함.
- 법교육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경비 지원여부를 검토함.
- 법교육지원법 내 양성기관 지정(또는 인증) 조항을 마련함.

□ 기대효과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법교육 사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함.
-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법교육 전문강사의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양성기관 운영을 통해 법교육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인력풀 구축에 기여함.

□ 사업목표

- 법교육 전문강사 자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법교육 전문강사 자원의 질적인 향상 기여
- 법교육 사업 및 법교육 전문강사의 인지도 및 신뢰성 향상

□ 추진방향

- 전문강사 양성기관 확대에 따른 강사 자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장강연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의견 수렴과정 진행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교육 전문강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일반 원칙
 - 전문강사 관리와 출장강연 업무를 일원화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강사 관리와 출장강연 업무를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또는 법무부 관련기관에 위탁함.
 - 전문강사 관리와 출장강연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함.
- 법교육 전문강사의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
 - 법교육 전문강사의 통합관리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의견 수렴의 과정이 요구됨.
 - 법무부 보호정책과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논의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출장강연 및 강사 관리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유사 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를 통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방향을 모색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 교육포털(<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

- 통합 홈페이지 내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전문강사 현황, 교육신청 및 변경, 법교육 강사자원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통합홈페이지 또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내 교육포털(또는 강사포털)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함.
- 법교육 출장강연 및 강사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류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법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전문강사 수급, 관리인력 정보 습득을 용이하도록 함.
 - 법교육 출장강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출장강연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법교육 전문강사의 개인별 경력 관리 및 활용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전문강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문강사의 인력풀 구축에 기여하도록 함.
 - 법교육 전문강사의 개인별 경력 관리를 통해 전문강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며, 다양한 법교육 서비스를 확대함.
- 법무부 추가 사항
 - 법교육 전문강사 통합 관리 기관을 선정함. 법교육 전담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또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무부 보호정책과 통합 홈페이지 또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홈페이지 내 법교육 전문강사 및 출장강연 사이트 구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통합 홈페이지 관리 구축에 따른 예산편성이 요구됨.

□ 기대효과

- 법교육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법교육 전문강사의 출장강연 신청 및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법교육 전문강사의 취업 및 진로 개척을 위한 이력 관리에 기여함.

□ 사업목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넓은 안목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각 분야별 세부 분석 및 대응방안 구체화

□ 추진방향

- 총괄 : 민간법문화진흥을 위한 미래상 조망과 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의 점검 및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 행정의 종합적인 추진방향 제시
- 국내·외 정세 분석 및 미래비전 설정
- 정부 정책 및 상위계획과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모색
- 각 분야별, 추진방향별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 전략적 추진방향과 배경 설정
-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plan)과 방안 마련

□ 추진내용 및 방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센터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 착수
- 센터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에 기반을 두어 연도별 평가 사업 시행
 - 센터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후 연도별로 센터에 관한 정책 성과 분석, 평가 수행

□ 기대효과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관련 정책의 체계화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정책 중장기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

립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향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중장기계획의 내실화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중장기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내실화에 기여함.

III-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관련 법령 개정

□ 사업목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도모

□ 추진방향

- 법교육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래 10여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 법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규정 재정비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의 법교육지원에 관한 내용 개정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교육지원법 개정
 - 법문화진흥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추가
(법교육지원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법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법교육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3. 법교육지원 기능의 조정
 4. 분야별 주요 시책
 5.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법교육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생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참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과 관련된 내용 정의 : 위탁, 시설, 기관 등의 다양한 유형 명시

- 강사양성 시스템 및 출장강연 파견에 관한 내용 추가

- 민간위탁공모사업에 관한 내용 추가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서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내용 추가(다른 계획과의 관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출, 시행계획의 평가 등)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제6조(전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만 있음, 해촉에 관한 내용 부재, 따라서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 필요

- 제6조의 법교육 실무협의회에서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역할에 관한 내용 부재, 구체적인 역할 명시

-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의 제1항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은 민간법문화진흥센터에서 현실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법문화진흥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에서 이를 담당하여 주력하여야 할 부분으로 개정 시 항목 이전

- 제12조(지정 요건)에서 제2항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을 것”의 내용을 첫 지정과 재지정을 분리하여 재지정의 경우는 “신청 직전 3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수정, 제4항의 ②에서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협조 및 연관성이 높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홍보에 관한 내용도 추가

□ 기대효과

○ 법교육지원 및 민간법문화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

○ 법교육지원 및 민간법문화센터 활성화의 근거타당성을 확보함.

○ 법교육지원 및 법문화센터 지원 확대의 예산 근거를 확보함.

□ 사업목표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 기관의 인지도 향상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 기관의 통합적인 홍보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추진방향

- 민간법문화진흥센터의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요자중심의 온-오프라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정보·자료제공 및 공유플랫폼 마련으로 법교육 인식 확산도모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문화진흥센터 소개 홈페이지 구축
 - 법교육 홈페이지(법사랑 사이버랜드) 내에 법문화진흥센터 소개 페이지를 구축함.
 - ※ 현재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법문화진흥센터에 관한 페이지 부재
 - 법문화진흥센터의 역할, 모집 및 지정 절차, 업무 등에 관한 법적인 사항과 관련 내용을 제시함.
 - 현재 지정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기관 현황 및 법교육 사업을 소개함.
- 법교육 사업 운영백서(또는 연례보고서) 제작 배포
 - 법무부 법교육을 홍보하기 위하여 법교육 운영백서(또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함.
 - 법교육 운영백서(또는 연례보고서)에 법문화진흥센터의 소개 및 안내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공함.

-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및 법교육지원 정책사업들을 안내하고 많은 수요처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법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모함.

기대효과

- 대국민적 법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됨.
- 법교육 및 법교육 지원의 당위성에 관한 여론이 형성됨.
- 법교육에 관한 참여 기회 및 저변 확대됨.

□ 사업목표

- 법교육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의사결정 단위 구성
- 법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추진

□ 추진방향

- 법교육 사업 전반을 총괄·지원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검토·추진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 진로교육진흥법 : 국가진로교육센터(위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인성교육진흥법 : 인성교육 주요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 ※ 인성교육진흥법 내 전담기구 사항 부재
- 법교육 전담기구 추진을 위한 회의기구(또는 법교육위원회) 구성

□ 추진내용 및 방법

- 법교육 전담기구의 필요성 논의 및 추진
 - 법교육지원법 제정 당시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기관 중심으로 법교육이 진행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음.
 -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의 종합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연수,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법교육 전반의 플랫폼 역할을(허브 기능)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추진함.
- 법교육 전담기구 추진위원회 구성
 - 전담기구 추진을 위한 법교육위원회 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함.
 - 법무부 공무원, 법교육위원회 위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함.
 - 법교육 전담기구의 유형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함.

○ 법교육 전담기구 유형 탐색(안)

- 법교육 전담기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	유형	주요내용(예시)	비고
1	전담기구 설치·운영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운영	
2	독립 법인 설립·운영	- 민법에 따른 별도 법인 형태 설립·운영 예) 문화예술진흥법의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	
3	유사(산하) 지정·운영	- 로파크 기능을 강화하여 전담기구 역할 수행 - 법교육 관련 정부산하기관을 지정하여 전담기구 역할 수행 예) 진로교육진흥법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민간 센터 기능 강화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중 법교육사업을 중추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 강화 - 법교육 사업 초기부터 법교육사업을 주도한 한국법교육센터의 명칭 변경과 역할 강화 검토	
5	주요 사업 위탁 운영	- 법무부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을 공모를 통해 위탁함. 예) 인성교육 관련 사업 교육개발원 위탁 - 법무부 사업 중 핵심사업 위탁단체의 전담기구 역할 수행	

기대효과

- 법교육 전담기구 설치 추진을 통해 법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구조가 마련될 수 있음.
- 법교육 전담기구의 기능 수행을 통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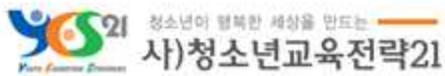
V. 최종 보고회 발표 자료





2019 법무부 정책 연구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CHAPTER |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1. 연구의 추진사항

연구 제목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기간

2019년 6월 ~ 2016년 11월(약 6개월)

연구 기관

사)청소년교육전략21 _ 연구팀 구성



3



I. 연구 개요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법문화진흥센터 지정과 업무

-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후, 동법 제5조에 따라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 활동 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전문가 및 자원봉사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육 법교육 연수,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등 실시

2.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요건

- 첫째,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한 법교육 운영(영리를 주된 목적이 아님)
- 둘째,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 실적 보유
- 셋째, 법교육을 위한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보유
- 넷째, 1명 이상의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 보유

4

1. 연구 개요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현황과 한계

- 2010년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이후, 2019년 현재까지 11개 센터가 지정
- 10년간 11개 센터만이 지정되어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관련 연구는 학술적·정책적으로 부족한 실정

4.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필요성

- 민간법문화진흥센터는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 필요성 제기

5

1. 연구 개요

3. 연구의 내용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사업 분석

법무부 법교육 사업 조사·분석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사업 조사·분석	국내 타 부처 유사기관 조사·분석
---------------------	-----------------------	-----------------------

↓ 문헌연구, 현장방문, 센터 관계자 면접, 법교육 관계자 및 연구진 회의 ↓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센터 현황 및 한계 제시	센터 활성화 방향 및 목표 제시	센터 활성화 방안 영역 및 주요과제 제시
------------------	----------------------	---------------------------

6



II. 법교육 및 센터 환경 분석



CHAPTER II 법교육 및 센터 환경 분석



7



II. 법교육 및 센터 환경 분석

1. 민간법문화진흥센터 분석

연번	기관명	최초지정연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1. 1.
2	한국법교육센터	2010. 1. 1.
3	법사당위원장국연합회	2013. 1. 1.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2. 16.
5	청소년희망재단	2013. 12. 16.
6	사)청소년교육전략21	2015. 4. 15.
7	한국사법교육원	2010. 1. 1.
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2016. 1. 1.
9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2019. 1. 1.
10	중남대학교 법률센터	2019. 11.
11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2019. 11.

8





III.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CHAPTER III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Ⅲ.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1.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1. 중장기 법교육 사업 및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의 부재
2. 법무부 주도 법교육 추진의 한계
3. 최신 트렌드 및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교육
4. 민간법문화진흥센터 양적 성장의 한계
5.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편중된 사업 현상
6.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소통) 부재
7.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제도 시스템 부재
8. 법교육 및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홍보 부재

11



Ⅲ.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2.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기본방향

기본방향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As-is)	영후(To-Be)
국가 주도의 법교육	민간 주도의 법교육 사업 방향 모색
단기, 일회성 사업 중심	중장기, 지속성 사업 중심
법무부 직접 사업 운영	민간 중심의 사업 운영
법교육 사업 지정 중심	민간 경쟁 중심(공역을 통한 질적 강화)
센터의 지정 및 지원 중심	센터의 법교육 실행 역량 강화 지원
제한된 센터의 정보제공 및 홍보 미약	홍보강화를 통한 센터의 양적 성장 및 영역 확대

14

III.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3. 활성화 방안 목표 및 과제(1)



III.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3. 활성화 방안 목표 및 과제(2)





IV. 세부 추진 사업(안)



CHAPTER IV 세부 추진 사업(안)



17



IV. 세부 추진 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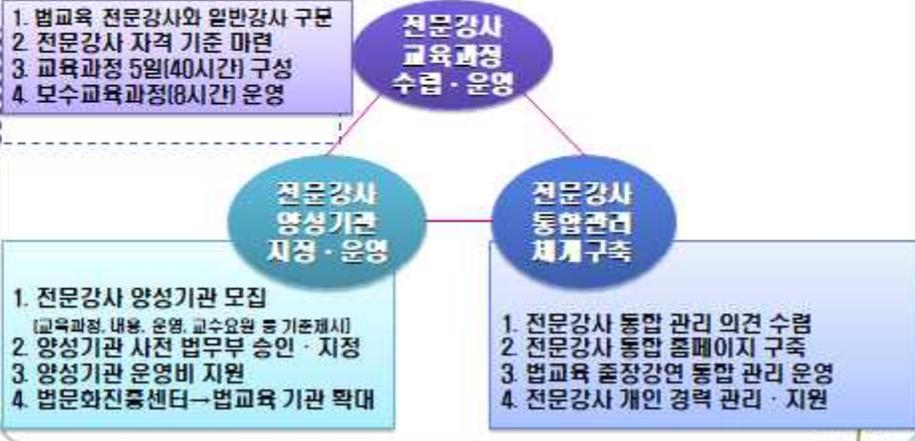
1. 센터 법교육 특화 사업 공모 운영



18

IV. 세부 추진 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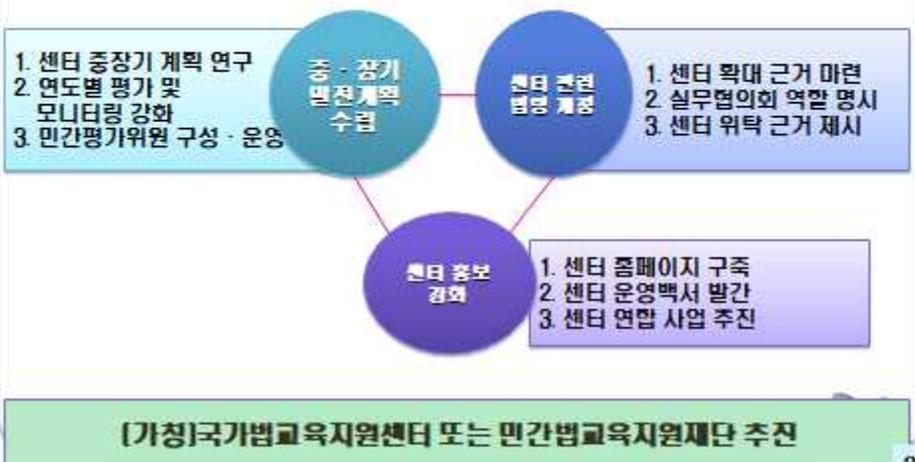
2. 강사제도 정착 및 안정적 운영



19

IV. 세부 추진 사업(안)

3. 센터 지원체계 강화



20



참 고 문 헌

법무부(2008). 법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 보고서, 서울: 법무부
_____(2015).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서울: 법무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https://www.kigepe.or.kr/kor/index.do>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https://sec.keris.or.kr/>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교육센터 <https://edu.fsec.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s://www.kywa.or.kr/>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테마활동 <https://www.mpva.go.kr/mpva/main.do>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acti.nhi.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본 연구보고서는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사)청소년교육전략21이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법무부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발 행 처 : 사)청소년교육전략21
- 발 행 : 2019년 11월 30일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51, 2층
- 전 집 화 : 02-582-1318
- 홈페이지 : www.yes21.org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